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20455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담당변호사 김창건

변 론 종 결 2023. 5. 18.

판 결 선 고 2023. 7. 13.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0가단11643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5. 5. 15.

신한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관하여 체결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각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채무자인 C의 친아들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경우

즉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C이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처음부터 C과 공모하거나 가담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별지 입금 내역 금원 모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 청구로서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공모하거나 가담하는 등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우선 C에게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인정되는지 불분명하고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아닌 별도의 사기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설령 C에게 강제집행면탈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C에게 자신의 통장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우석, 판사 전상범, 판사 정욱도

입금 내역

1. 신한은행 계좌번호

일 자	입금자 들	금 액
2015. 05. 15.		30,000,000원
2015. 05. 15.		6,000,000원
2015. 05. 15.		4,000,000원
2015. 05. 28.		10,000,000원
2015. 06. 17.		1,000,000원
2015. 06. 29.		20,000,000원
2015. 07. 02.		14,055,266원
2015. 07. 27.		20,000,000원
2015. 09. 25.		5,000,000원
2015. 09. 25.		5,000,000원
2015. 10. 06.		1,000,000원
2015. 10. 06.		1,200,000원
2015. 10. 12.		1,400,000원
2015. 10. 12.		1,000,000원
2015. 10. 12.		1,000,000원
2015. 10. 21.		2,000,000원
2015. 10. 27.		5,000,000원
2015. 11. 02.		4,000,000원
2015. 11. 12.		1,523,160원
2015. 11. 25.		1,000,000원
2016. 03. 25.		1,000,000원
2016. 04. 29.		4,000,000원
2016. 05. 18.		1,190,000원
2016. 07. 19.		12,137,699원
2016. 08. 09.		1,300,000원
2016. 08. 24.		1,530,000원
2016. 08. 24.		1,200,000원
2016. 08. 26.		1,060,000원
2016. 09. 30.		1,000,000원
2016. 10. 05.		3,000,000원
2016. 10. 11.		1,200,000원
2016. 10. 18.		1,000,000원
2016. 12. 03.		1,300,000원
2016. 12. 09.		10,000,000원
2018. 05. 21.		1,200,000원
2018. 08. 08.		3,740,000원
2018. 09. 06.		14,300,000원
2018. 09. 19.		6,240,000원
2018. 09. 19.		2,520,000원

2018. 10. 04.		2,000,000원
2018. 10. 08.		4,000,000원
2018. 11. 09.		1,800,000원
2018. 12. 07.		1,800,000원
2019. 12. 10.		2,900,000원
합 계		215,596,125원

2. 신한은행 계좌번호

일 자	입금자 등	금 액
2015. 05. 15.		2,000,000원
2015. 07. 01.		3,000,000원
2015. 07. 23.		5,000,000원
2015. 07. 23.		2,000,000원
2015. 08. 10.		1,000,000원
2015. 08. 13.		8,000,000원
2015. 08. 14.		3,000,000원
2015. 08. 31.		2,000,000원
2015. 09. 03.		5,000,000원
2015. 09. 08.		22,000,000원
2015. 09. 16.		2,000,000원
2015. 09. 17.		6,000,000원
2015. 09. 17.		4,000,000원
2015. 10. 30.		10,000,000원
2015. 12. 03.		10,000,000원
2015. 12. 04.		2,200,000원
2015. 12. 18.		13,000,000원
2015. 10. 06.		1,162,570원
2016. 01. 06.		15,000,000원
2016. 01. 22.		3,049,000원
2016. 02. 19.		10,000,000원
2016. 03. 22.		10,000,000원
2016. 04. 04.		1,800,000원
2016. 04. 21.		10,000,000원
2016. 05. 08.		1,000,000원
2016. 06. 08.		1,000,000원
2016. 06. 09.		5,000,000원
2016. 07. 08.		7,000,000원
2016. 08. 10.		5,000,000원
2016. 08. 26.		1,000,000원
2016. 09. 05.		4,000,000원
2016. 10. 13.		1,000,000원
2016. 10. 25.		10,000,000원
2016. 10. 28.		1,000,000원
2016. 11. 07.		3,000,000원

2016. 11. 10.		10,000,000원
2016. 12. 29.		2,000,000원
2018. 01. 10.		5,000,000원
2018. 02. 20.		1,500,000원
2018. 03. 08.		5,480,000원
2018. 03. 15.		10,000,000원
2018. 03. 16.		10,000,000원
2018. 03. 16.		4,000,000원
2018. 03. 16.		6,000,000원
2018. 03. 29.		12,000,000원
2018. 05. 09.		3,150,000원
2018. 05. 18.		1,000,000원
2018. 06. 08.		2,900,000원
2018. 06. 08.		1,500,000원
2018. 06. 11.		5,000,000원
2018. 06. 11.		3,000,000원
2018. 07. 05.		1,065,000원
2018. 07. 06.		4,500,000원
2018. 07. 09.		1,000,000원
2018. 07. 12.		2,000,000원
2018. 07. 13.		1,000,000원
2018. 07. 23.		3,000,000원
2018. 07. 31.		5,000,000원
2018. 08. 09.		5,000,000원
2018. 08. 09.		2,000,000원
2018. 08. 27.		1,300,000원
2018. 08. 27.		1,212,170원
2018. 09. 03.		5,000,000원
2018. 09. 05.		2,000,000원
2018. 09. 11.		8,000,000원
2018. 10. 15.		5,000,000원
2018. 10. 17.		20,000,000원
2018. 10. 24.		3,000,000원
2018. 10. 25.		4,000,000원
2018. 10. 25.		3,500,000원
2018. 11. 06.		1,000,000원
2018. 11. 09.		1,000,000원
2018. 11. 14.		3,000,000원
2018. 11. 20.		2,000,000원
2018. 11. 22.		3,000,000원
2018. 12. 05.		10,000,000원
2018. 12. 11.		10,000,000원
2018. 12. 12.		3,950,000원
2018. 12. 20.		3,300,000원
2018. 12. 27.		1,000,000원
2018. 12. 31.		10,000,000원
2019. 02. 27.		50,000,000원
2019. 02. 27.		50,000,000원
2019. 04. 01.		34,000,000원
2019. 04. 03.		50,000,000원

2019. 04. 05.		3,000,000원
2019. 04. 11.		1,500,000원
2019. 05. 12.		1,700,000원
2019. 05. 23.		20,000,000원
2019. 06. 12.		30,000,000원
2019. 06. 20.		5,000,000원
2019. 06. 24.		1,500,000원
2019. 07. 09.		2,000,000원
2019. 07. 10.		2,500,000원
2019. 07. 18.		3,000,000원
2019. 07. 19.		2,000,000원
2019. 08. 01.		10,000,000원
2019. 08. 01.		90,000,000원
2019. 08. 01.		10,190,000원
2019. 08. 02.		6,000,000원
2019. 08. 06.		3,000,000원
2019. 08. 08.		12,000,000원
2019. 08. 08.		88,000,000원
2019. 08. 22.		4,000,000원
2019. 09. 06.		3,000,000원
2019. 09. 10.		1,000,000원
2019. 09. 23.		2,000,000원
2019. 09. 23.		1,000,000원
2019. 09. 24.		5,000,000원
2019. 09. 27.		2,500,000원
2019. 09. 27.		1,500,000원
2019. 10. 04.		2,010,000원
2019. 10. 10.		3,000,000원
2019. 10. 29.		2,300,000원
2019. 11. 12.		30,000,000원
2019. 12. 09.		1,000,000원
2019. 12. 23.		1,000,000원
합 계		933,268,740원

※ 입금자가 피고인 내역과 100만원 미만의 금원 내역을 제외한 것입니다.

